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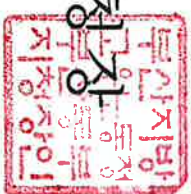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6-60호

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조치 공시송달 공고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기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내 사회적기업에 이에 대한 <경고 및 시정명령>처분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소개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7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동부지청장



1. 권 명: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및 시정명령(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,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미충족)

2. 근 거: 『사회적기업육성법』 제8조제1항2호, 같은 법 제17조, 『2026년도 사회적기업기업 인증업무지침』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불입(공시송달 명단)

4. 공고기간: 2026.7.7. ~ 2026.7.20. (15일간)

※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5.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김 회 경 (Tel. 051-559-663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<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및 시정명령 처분> 공시송달 명단

연번	사업장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 (소재지)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개선완료 기한	송달 불능 사유
				위반사항	조치 내용	시정내용		
1	주식회사 청*** (제2022 -***호)	김*환 (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상곡1길 84)	사회적기업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및 시정명령 알림	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요건 미충족 (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대비 50%미만)	경고	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내 지출되는 총노무비의 50%이상 유지	'27.4월 사업보고서 제출 (26.12월말 기준)	소재지 불명 (폐문 부재)
			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미충족(이사회 미개최)	시정 명령	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반기1회 이상 개최 (이사회 회의록, 최근 등기부등본)	2026. 8.10.(월)		

※ 경고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4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7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

